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1차 위반 시 6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21. ~ 4. 30., 2024. 6. 11. ~ 6.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후단 중 “나목2)마)”를 “나목2)바)”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제2호바목5)”를 “제2호바목6)”으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명

별표 2 제2호나목2)다)부터 마)까지를 각각 라)부터 바)까지로 하고, 같은 2)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60
---	----

별표 3의 제목 중 “제9조의2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바목3)부터 5)까지를 각각 4)부터 6)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	○ 1차: 사업정지(10일) ○ 2차: 사업정지(20일)
---	------------------------------------

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
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3차: 허가취소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가목3)러), 같은 호 <u>나목2)마)</u> 및 같은 호 다목4)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 ----- ----- ----- ----- ----. ----- ----- <u>나목2)바)</u> ----- ----- ----- -----.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 <u>제2호 바목5)</u>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 ----- ----- ----- ----- <u>제2호 바목6)</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운영위원회) ① 법 제51조의4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제11조의4(운영위원회) ① ----- ----- ----- -----.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 4. (생략) <u><신설></u>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제조 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 명하는 사람 2명</u>
② ~ ⑩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4022